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45
----------	--------

제출일자 : 1999. 8. 1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거창군 현행 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생산원가에 근접토록하여 상수도 시설확충, 맑은물공급 및 수질개선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자 함.

주요골자

-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
- 업종별로 부과단계는 현행 누진단계를 적용하고, 누진단계별 부과금액을 새로 정함 (제26조 별표2)

개정근거

- '98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요금)</p> <p>① <u>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6조(요금)</p> <p>① <u>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u>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2]

업종별요율표

업종별	사 용 량 (톤)	톤 당 단 가 (원)	비 고
가정용	0 ~ 10	310	
	10 초과 ~ 20	360	
	20 초과 ~ 30	410	
	30 초과 ~ 40	458	
	40 초과 ~ 50	508	
	50 초과 ~	558	
업무용	0 ~ 20	450	
	20 초과 ~ 50	510	
	50 초과 ~ 100	575	
	100 초과 ~ 300	640	
	300 초과 ~	700	
영업용	0 ~ 30	500	
	30 초과 ~ 50	575	
	50 초과 ~ 100	650	
	100 초과 ~	725	
육탕1종	0 ~ 200	440	
	200 초과 ~ 300	510	
	300 초과 ~ 500	580	
	500초과 ~	651	
육탕2종	0 ~ 200	770	
	200 초과 ~ 500	893	
	500 초과 ~ 1000	1,016	
	1000 초과 ~	1,14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업 종 별 요 율 표			
업종별	사 용 단 계 별		요 금 (원)
	구분	사 용 량 (톤)	
가정용	기본	0 ~ 10	1,900 (정액)
	초과	10초과 ~ 20	260 (톤당)
		20초과 ~ 30	310 (톤당)
		30초과 ~ 40	360 (톤당)
		40초과 ~ 50	430 (톤당)
		50초과 ~	510 (톤당)
	기본	0 ~ 20	4,200 (정액)
초과	20초과 ~ 50	370 (톤당)	
	50초과 ~ 100	410 (톤당)	
	100초과 ~ 300	450 (톤당)	
	300초과 ~	560 (톤당)	
영업용	기본	0 ~ 30	10,000 (정액)
	초과	30초과 ~ 50	460 (톤당)
		50초과 ~ 100	540 (톤당)
		100초과 ~	630 (톤당)
육탕1 종	기본	0 ~ 200	55,000 (정액)
	초과	200초과 ~ 300	410 (톤당)
		300초과 ~ 500	430 (톤당)
		500초과 ~	580 (톤당)
육탕2 종	기본	0 ~ 200	95,000 (정액)
	초과	200초과 ~ 500	550 (톤당)
		500초과 ~ 1000	690 (톤당)
		1000초과 ~	850 (톤당)

개 정 (안)		
업 종 별 요 율 표		
업종별	사 용 량 (톤)	톤당단가 (원)
가정용	0 ~ 10	310
	10초과 ~ 20	360
	20초과 ~ 30	410
	30초과 ~ 40	458
	40초과 ~ 50	508
	50초과 ~	558
	업무용	0 ~ 20
20초과 ~ 50		510
50초과 ~ 100		575
100초과 ~ 300		640
300초과 ~		700
영업용	0 ~ 30	500
	30초과 ~ 50	575
	50초과 ~ 100	650
	100초과 ~	725
육탕1 종	0 ~ 200	440
	200초과 ~ 300	510
	300초과 ~ 500	580
	500초과 ~	651
육탕2 종	0 ~ 200	770
	200초과 ~ 500	893
	500초과 ~ 1000	1016
	1000초과 ~	1140